

제 337 호

1973. 1.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시 보

차 례

이 영공보실장직을 기이므로
필립으로 임명하였음.
1973. 1. 10.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조 례

제 744 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3

◎ 고 시

제 1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설시계획인가 14
제 2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폐지 17

◎ 공 고

제 2 호 3급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 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시험장소지정 17

◎ 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3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3. 1. 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 점 생

서울특별시 중학교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조례제 658호 개정1971.2.17.

서울특별시조례제 693호 개정1972.2.7.

서울특별시조례제 744호 개정1973.1.9.

◎ 서울특별시조례 제 744 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법시행령제 69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 칩) 주 칩은 교육감이 정하는 컴퓨터에 의하여 행하되 주 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미리 공고한다.

제 3 조 (학교군) 학교군 및 중학구 수는 8 학군 3 학구로 하고 학교군별, 중학구별,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별표와 같다.

부 칙

(1) 이 조례는 1971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2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3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학교내 지역별중학교 및 국민학교일람

학군별	세 분 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1 학군	공 동 지역	삼 선	혜 화	성 신	혜 화	
		동 성	창 경	정 신	창 경	
		고 명	돈 암	한 성	돈 암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1학군	공 동 지 역	보 성 용 문 경 신 동국사대부속	효 제 삼 선 매 원 정 덕 우 촌 은 석 안 암 성신사대부속	성신사대부속	효 제 삼 선 매 원 정 덕 우 촌 은 석 안 암 성신사대부속	
	정 능 지 역	고 려 흥 익	송 덕 송 덕 성 덕 흥 익	동 구 고 려	송 덕 청 덕 성 덕 흥 익	유석중 (남여공학)
	도 봉 지 역	신 일 영 훈 서 별 창 동 수 유	도 창 화 화 수 수 우 송 삼 삼 미 미 영 영 한국신병 신 설 신 창	도 봉 수 동 정 계 영 유 성 이 창 성 창 창	도 봉 유 동 의 계 훈 유 암 이 동 성 창 창	창동 (남) 영동 (남) 영영 (남) 영영 (남)
	장 위 지 역	염 광 송 인	염 광 송 인	염 광 송 인	염 광 송 인	염광 (남 여 공학)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1학군	장 위 지역	광 남 대 문 덕 4 교	운 문 대 문 덕 5 교	송 장 월 송 5 교	례 위 계 곡 2 교	창 문 장 월 송 5 교	위 계 인 곡 31 교	
	계	18 교	31 교	14 교	31 교			
2학군	공동지역	대 성 동 대 문 서울사대부속 6 교	광 일 문 대 문 용 종 풍 신 13 교	창 송 동 용 종 풍 신 3 교	신 신 신 두 암 인 동 능 파 량 광 회 육 3 교	동 경 정 덕 회 화 창 송 동 용 종 풍 신 홍 홍 청 경 대 서 울 삼 13 교	신 신 신 두 암 인 동 능 파 량 회 광 육 울 삼 31 교	
	면목지역	장 중 면	안 화 목	면 중 금	목 화 성	면 해 송	목 원 곡	면 중 금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2학군	면목지역	중 량 4 교	중 곡 화 량 태 강 삼 육 6 교	영 략 한 샘 5 교	중 곡 화 량 태 강 삼 육	
	전농지역	농 대 병 설 청 량 회 경 3 교	전 농 동 리 전 답 실 곡 전 회 경 문 6 교	동 대 문 덕 화 회 경 3 교	전 농 동 리 전 답 실 곡 전 회 경 문 6 교	
	계	13 교	25 교	11 교	25 교	
3학군	공덕지역	덕 수 한 양 광 회 성 동 배 명 한 영 6 교	장 광 서울사대부속 홍 인 무 학 동 명 행 당 사 근 한 양 교 대 부 속 10 교	무 학 한 양 행 당 서울사대부속 4 교	장 광 서울사대부속 홍 인 동 명 무 학 행 당 사 근 한 양 서울교대부속 10 교	
	중구지역	배 재 동 북 남 대 문 남 산 신 일 회 영	남 대 문 남 산 신 일 회	계 성 송 의	중 남 대 무 남 산 신	

22-5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3 학군	중 구 지 역		명 리 제 송 동 충 지 라 성 의 북 무		영 명 리 제 송 동 회 지 라 성 의 북 무	
		2 교	10 교	2 교	10 교	
	금 호 지 역	장 대 충 경	금 옥 동 금 호 옥 수 산 북 구	옥 금 수 호	금 옥 동 금 호 호 옥 수 산 북 구	
		2 교	6 교	2 교	6 교	
	성 수 화 양 지 역	수 도 사 대 부 속 성 건 수 국	경 언 장 자 광 신 수 도 사 대 부 속 성 동 동 북 안 양 장 천	수 도 사 대 부 속 성 명 수 성	경 언 장 자 광 신 수 도 사 대 부 속 성 동 동 북 안 양 장 천	수 사 대 부 속 (남 여 공 학)
	계	3 교	8 교	3 교	8 교	
	계	13 교	34 교	11 교	34 교	
4 학군	천 호 지 역	천 동 호 신	구 천 호 여	천 영 호 파	구 천 호 여	천 호 중 (남 여 공 학)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4학군	천호지역	2 교	경기도서부 성 내 5 교	2 교	경기도서부 성 내 5 교	
	송파지역	성 문 1 교	왕 중 대 3 교	성 문 1 교	왕 중 대 3 교	성 문 (남여공학)
	계	3 교	8 교	3 교	8 교	
5학군		은 광 문 상 2 교	신 중 남 주 인 언 3 교	영 동 1 교	신 중 남 주 언 언 3 교	
	계	2 교	3 교	1 교	3 교	
6학군	공동지역	송 용 선 한 신 용 5 교	실 산 린 강 산 후 산 청 금 남 한 신 상 신 효 용 11 교	암 광 파 양 정 강 산 명 광 창 산 4 교	성 용 신 상 심 신 광 명 청 금 남 한 신 신 성 호 후 산 상 용 12 교	파 양 정 강 산 광 심 창 암 광 명 산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6학군	한남지역	단 오	국 산 용 한 서 보 이 신	용 한 서 보 이 신	암 남 고 광 원 동	
		2 교	6 교	1 교	6 교	
	혹석지역	동 중 상	양 대 부 속 도 남 은 본 강 명 수 중 양 대 학 부 속 사	성 로 동 남 대 중 양 대 학 부 속 당	성 로 동 남 대 중 양 대 학 부 속 당	
		3 교	7 교	2 교	7 교	
강남지역	영 봉	동 포 천	노 상 봉 신 은 관 영 영	량 진 도 천 림 천 악 화 본	량 진 도 천 림 천 악 화 본	
		2 교	8 교	3 교	8 교	
	계	12 교	32 교	10 교	33 교	
7학군	공동지역	장 성	훈 남 우 도	신 림 신 림	영 대 우 도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7학군	공동지역	강 남	영 신 대 방 영 중 신 길 영 남 영 동 삼 육 재 환	영 신 대 방 영 중 신 길 영 남 영 동 삼 육 재 환	영 신 대 방 영 중 신 길 영 남 영 동 삼 육 재 환	
		3 교	9 교	2 교	9 교	
	당산.구로 지 역	영 도 당 산	당 산 구 영 등 포	도 림 영 봉	당 산 구 영 등 포	
		2 교	4 교	2 교	4 교	
	시흥.대림 지 역	동 일 대 림 강 서 강 남	문 탐 문 서 구 로 시 영 동 구 로	창 동 성 남 홍 일 로	문 탐 영 문 구 로 시 동 구 로	동 일 중 (남여공화)
	4 교	7 교	4 교	7 교		
	여 의 도	여 의 도	여 의 도	여 의 도	여 의 도	
	계	10 교	21 교	9 교	21 교	
8학군	공동지역	중 앙 중 동	서 대 문 덕 수	성 정 숙 명	서 대 문 덕 수	

학군별	세 부 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8학군	공 동 지 역	수 회 대 5 교	송 문 동 금 교 재 7 교	덕 풍 김 5 교	성 문 명 금 교 재 7 교	
	세 검 정 지 역	청 보 2 교	운 인 세 검 경 상 명 사 대 부 속 5 교	배 화 상 명 사 대 부 속 2 교	동 운 정 북 상 명 사 대 부 속 5 교	
	불 광 지 역	대 영 대 인 4 교	신 천 성 창 독 립 안 홍 불 대 갈 은 선 교 경 11 교	동 예 문 선 성 5 교	명 일 영 일 원 독 립 안 홍 불 대 갈 은 선 교 경 은 12 교	
	연 회 지 역	연 회 응	응	연 회 응	응	연 회 중 (남 여 공 학)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8학군	연회지역	명지 총명 연	수은 총복 연	색평 암좌 회	명지 총암 연복 가좌	총암 (남여공학)	
		5 교	6 교	3 교	5 교		
	신촌지역	한성 이대부 속광 경	북성 추대부 속대 창창 서성 재서	성계 속신 천서 교익 산원 강	중앙 탄대부 속익 산	북성 추대부 속현 천서 교익 산원 강	이대부속 (남여공학)
	5 교	11 교	5 교	12 교			
	마포지역	양경 수배 동마	봉아 한소 운용 공	래현 서의 화강 덕	창마 서도 울	봉문 한소 공용 유신	래화 서의 덕강 석석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 교	국 민 학 교	중 학 교	국 민 학 교	
8 학 군	마 포 지 역		유 석 신 석 마 포 한 국 구 화		마 포 한 국 구 화	
	계	7 교	11 교	3 교	10 교	
오 류 학 구		유 한	오 류 교 칙 개 봉	오 류	오 류 교 칙 개 봉	
	계	1 교	3 교	1 교	3 교	
화 곡 지 구		성 서	개 송 양 화 연 신 오 곡	화 곡	개 송 양 화 연 신 오 곡	
	계	1 교	7 교	1 교	7 교	
		재 현	상 계 연 촌 신 상 계	상 계	상 계 연 촌 신 상 계	
	계	1 교	3 교	1 교	3 교	
총 계		102 교	218 교	85 교	219 교	

고 시

㉞ 서울 특별시 고시 제 1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청 지역계획과 및
경기도 시흥군청과 사업시행자인 대한
석유공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1. 4.

서울 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군 파천면 주암리 산
13 - 1 일대
2. 사업의 종류 : 유류저장 및 송유설
비 시설사업
명칭 : 대한석유공사서울유류저장소시
설공사
시행면적 : 92,400 m²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가 64 - 5
성명 : 대한석유공사대표 박 원 석
4. 사업의 착수 : 인가후 1 주일이내
준공년월일 : 72. 12. 31.
5. 사용할토지 : 대한석유공사소유 (소유
권 및 천리명세) (생략)

6. 인가내용 : 날첨인가증 및 도면표시
와 같음.

인 가 증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시흥군
파천면 주암리 산 13-1 일대
2. 사업의 종류 : 유류저장 및 송유설
비 시설 사업
명칭 : 대한석유공사 서울유류저장소
시설공사
시행면적 : 92,400 m²
3.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가 64-5
성명 : 대한석유공사대표 박 원 석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 호
5. 사업기간
착 공 : 인가증수령일로부터 1 주일이내
준 공 : 1973. 12. 31.
6. 사용할 토지 : 대한석유공사소유 (소
유권 및 천리명세) (생략)
위와 같이 아래 조건을 부하여 도
시계획법 제 25 조 및 제 26 조 규정예
의거 도시 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별첨
설계도서와 같이 인가함.

1973. 1. 4.

서울 특별시장

인 가 조 건

1. 본 사업은 사업신청서와 설계도
및 설계서에 의거 시행하되 다음
인가조건을 특히 준수함은 물론 도

시계획법에 정하는 절차나 명령 또는 이에 관한 처분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은 공사 착공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경계구역은 확인할 수 있는 경계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본 인가조건에 의거 시설 규모가 변경되거나 조절할 사항이 있을시는 설계변경에 앞서 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이에 맞도록 시공하되, 모든 종류의 공정을 다음 순서로 시공한다.

정지공사, 도로, 하수도, 유류저장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4. 본 공사는 정지공사가 준공검사 되기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5. 공사집행에 따른 인접지의 피해 및 통행인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토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피해는 전적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 또는 원상복구비는 감독청이 결정한다)

6. 본 지역의 임목 벌채 및 밭파에 대하여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도 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시는 이를 필한후 착공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집행의 착수 및 준공에 있어서는 별도로 토지개발사업법 제 55조의 이행과 지적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시에는 군수가 발부하는 인종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8. 공사진척사항을 수시로 공정표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9. 지구내 하수시설은 인접에 피해가 없도록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골재는 사전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현장에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는 중도에 중단 또는 미 시공하거나 변경시공 하는등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기간의 연장 기타 인가 조건과 행정지시에 위배 불응할시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2. 본 사업을 완수키 위하여 귀하가 공사이행 보증금은 사전에 예납한다.

13. 본 인가 조건과 설계도서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 시행지시할 때는 이를 시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는 건설업 면허 또는

관계 공사성질에 따른 면허 소지
자라야만 시공할 수 있다.

15.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하자
가 발생하였을 시는 이를 즉각 복
구하고 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
으로 시행자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
여야 한다.

- (1) 불의의 사고 (저유탱크 폭발등)
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 (2) 임야훼손으로 인한 저지대 농경
지의 토사매물
- (3) 저유의 누수로 인한 식수오염
- (4) 형질 변경 및 절개지 부분에
대한 조경사업 실시

16. 본 공사중 유류저장 시설 시공
에 있어서는 시행에 앞서 소방규격
에 맞는 소방시설등 재반 사고방지
를 위하여 소방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사전 위험물
저장소 설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중 유류저장 시설 시공
에 앞서 방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방공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계획을
준수 사업시행하여야 한다.

18. 기타 본 공사는 국방상 전 령
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방위자원 시
설임으로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19. 기타 본 공사로 인한 절개지등
복화실시에 대하여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 경기도지사
와 협의하여 이를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20. 본 시설은 국가안보목표 "가" 급
으로 지정되어야 되는 시설임으로
관계법에 따라 시설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됨으로 다음 설비를 완비
하여 본 시설의 경계대책에 철저히
기할것.

- (1) 탱크별 업체 설치
- (2) 지상 침투 발견을 위한 경보장
치.
- (3) 외곽 및 내곽에 불순분자 침입
시의 사격거점 구축
- (4) 지형을 고려한 위장시설
- (5) 지점별 방화대책
- (6) 인명구조 및 연락방법 시설완비

21. 본 사업 시행지중 주암리 104 - 2,
3, 4, 5, 지역은 별도 군당국에 군사상
지장 유무를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가키로 함.

22. 이상조건을 위배하였을 때는 본
인가를 취소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인가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하는 동시 허가 및 인가

청과 감독청의 지시에 따라 자비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고시제 2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변경 (폐지)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3. 1. 9.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 노선 폐지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3		6	120	양평동 6가 74	양평동 6가 76	일반용지로 용도 변경
폐지	"	"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 호

3 급전기주임기술자 자격검정 1 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 차시험장소지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0 호 (72.9.28)

에 의하여 1972. 12. 28 실시한

1972년도 3급 전기주임 기술자 자격검정 1차시험 합격자와 2차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3. 1. 10.

서울특별시장

다 음						
1. 3급 전기주임 기술자자격검정 1차시험합격자 (응시자 성명 생략)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1	73	140	199	260	319	382
3	74	141	203	261	320	383
5	79	142	204	262	322	385
6	86	143	205	266	323	386
9	87	144	207	268	324	388
12	90	146	208	278	327	399
13	91	148	209	279	329	40
21	92	153	210	280	330	409
22	96	154	211	281	331	412
24	98	156	213	282	332	416
31	99	157	214	284	334	419
36	100	158	215	285	335	420
37	105	159	217	290	337	423
38	110	160	218	293	340	425
39	112	161	220	295	341	430
41	116	162	221	296	342	432
47	117	163	222	297	344	441
48	120	165	223	298	347	447
52	122	171	224	301	348	449
54	124	175	227	303	349	450
55	125	176	228	304	354	451
56	126	177	229	305	358	452
58	127	179	231	313	359	453
61	128	183	232	314	360	454
64	129	185	233	315	361	455
67	135	188	237	316	364	463
68	137	191	242	317	365	465
69	138	195	250	318	370	471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473	545	604	647	704	776	831
474	547	607	648	705	780	832
476	548	608	649	706	782	833
478	550	609	650	708	783	835
481	551	610	653	710	785	836
484	553	612	654	711	790	839
485	555	613	655	712	792	840
493	556	614	657	713	794	844
495	560	615	659	717	795	848
496	561	616	663	719	796	849
501	562	617	666	726	797	852
502	564	621	669	731	798	855
503	572	622	670	733	799	857
504	574	623	670	733	799	857
504	574	624	672	736	800	861
510	576	625	674	737	801	868
512	579	626	676	738	803	870
516	580	627	677	739	807	871
517	581	628	678	741	809	872
519	582	629	682	742	810	873
520	584	630	683	744	811	874
521	585	633	686	755	812	880
523	587	634	687	756	813	881
524	588	635	691	759	814	882
526	589	636	692	762	815	884
527	594	637	695	763	817	888
530	595	641	696	765	819	889
531	596	642	697	766	825	894
532	598	643	698	767	826	896
534	599	644	699	771	828	898
537	600	645	700	772	829	899
538	602	646	701	773	830	900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906	982	1049	1192	1295	1384	1478
914	983	1103	1195	1300	1385	1479
916	985	1106	1196	1302	1386	1480
918	988	1107	1198	1306	1387	1481
923	993	1110	1200	1307	1388	1489
924	994	1113	1201	1308	1391	1494
927	998	1116	1204	1317	1398	1496
929	999	1117	1206	1319	1400	1497
930	1000	1121	1207	1320	1406	1498
931	1001	1123	1209	1324	1407	1500
936	1002	1125	1215	1325	1408	1502
937	1003	1128	1221	1327	1409	1504
939	1012	1131	1224	1332	1410	1506
946	1013	1133	1231	1335	1411	1508
950	1014	1143	1232	1337	1415	1512
951	1019	1145	1234	1338	1417	1525
952	1020	1153	1237	1340	1422	1526
953	1021	1154	1244	1341	1423	1531
954	1022	1155	1245	1343	1425	1532
955	1026	1161	1246	1348	1430	1533
956	1027	1162	1249	1350	1433	1536
958	1028	1167	1250	1352	1434	1541
965	1029	1175	1252	1356	1441	1550
968	1033	1178	1272	1358	1449	1553
969	1038	1182	1274	1360	1450	1554
971	1039	1184	1276	1364	1455	1558
974	1043	1185	1282	1374	1464	1559
975	1045	1186	1283	1378	1470	1560
980	1047	1190	1285	1380	1473	1564
981	1048	1191	1292	1382	1476	1571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응시 번호
1585	1717	1792	1869	1978	2067	2124
1590	1722	1795	1870	1979	2069	2126
1595	1726	1797	1871	1980	2075	2127
1605	1727	1798	1872	1981	2076	2128
1606	1728	1799	1877	1982	2077	2129
1609	1737	1805	1879	1983	2079	2130
1613	1738	1807	1886	1994	2080	2131
1620	1739	1808	1889	1996	2082	2133
1621	1740	1809	1891	1998	2084	2136
1625	1742	1810	1892	2001	2085	2138
1650	1746	1811	1894	2003	2086	2140
1653	1749	1815	1895	2004	2088	2141
1655	1753	1816	1898	2010	2089	2142
1656	1754	1817	1899	2013	2092	2144
1669	1757	1818	1901	2029	2093	2145
1677	1758	1820	1904	2033	2094	2147
1678	1761	1821	1909	2038	2095	2154
1681	1762	1823	1921	2039	2097	2161
1682	1763	1824	1924	2040	2101	2171
1683	1764	1825	1925	2041	2105	2173
1687	1765	1836	1928	2045	2107	2174
1688	1766	1840	1934	2050	2108	2175
1690	1767	1844	1935	2055	2112	2180
1696	1774	1846	1938	2056	2114	2182
1708	1780	1854	1946	2057	2115	2186
1710	1782	1856	1952	2059	2117	2189
1711	1787	1861	1953	2060	2119	2203
1714	1789	1862	1967	2063	2120	2214
1715	1790	1865	1972	2064	2121	2218
1716	1791	1867	1976	2065	2122	2221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2222	2335	2454	2558	2691	2848	2949
2223	2338	2455	2560	2692	2849	2954
2226	2349	2456	2561	2705	2851	2958
2238	2350	2462	2562	2708	2852	2975
2239	2352	2467	2563	2721	2853	2977
2242	2354	2473	2565	2731	2859	2981
2244	2356	2478	2566	2732	2861	2982
2248	2359	2485	2567	2744	2865	2984
2251	2379	2494	2568	2751	2870	2992
2257	2380	2497	2569	2759	2872	2994
2260	2381	2498	2570	2764	2874	2997
2266	2382	2500	2571	2765	2879	2999
2283	2383	2502	2572	2767	2880	3002
2286	2384	2510	2580	2770	2885	3004
2287	2387	2514	2582	2773	2885	3016
2288	2393	2520	2584	2775	2895	3017
2290	2394	2521	2587	2777	2896	3029
2304	2403	2523	2588	2784	2897	3051
2306	2414	2533	2595	2801	2903	3064
2314	2416	2535	2596	2803	2905	3069
2322	2428	2538	2597	2806	2911	3071
2323	2439	2539	2608	2819	2912	3072
2324	2442	2540	2610	2823	2914	3085
2325	2443	2549	2628	2828	2917	3086
2326	2444	2551	2641	2831	2919	3087
2327	2447	2553	2650	2837	2942	3090
2328	2448	2556	2667	2841	2944	1461
2331	2451	2557	2680	2845	2948	계 1029 명

2. 2차 (구술) 시험 실시

가. 일 시 : 1973.1.23 09: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다. 지참서류 :

(1) 수험표

(2)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3) 주민등록증 및 인장

라. 1차 합격자는 구술시험당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에 집합하여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험번호	집합시간
0001번부터 ~ 1000번까지	09 : 00 시
1001번부터 ~ 3090번까지	13 : 30 시

사 령

◎ 1973. 1. 9.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강영호
감사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주사 조인혁
상정과 근무를 명함.

시설관리과 지방행정주사 권정목
종로구 근무를 명함.

운수지도과 지방행정주사보 남해균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 윤일섭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3호봉을 급함.

행정과 행정관리계장에 보함.

중구보건소 지방행정사무관 김완규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72. 9. 15 (발

령 제 623 호) 징계처분 (파면)

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6월

에 처함.

복직을 명함.

영등포구 시민봉사실장에 보함.

◎ 1973. 1. 10.

성동구 지방간호기사보 심상남
보건소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급수과 기한부공무원 이천복
기한만료로 인하여 그 직을 면함.

수도국 지방기계지원 이영남
급수과 복직을 명함.

자동차 정비장근무를 명함.

4호봉을 급함.

만리동 지방토목지원보 유치열
배수지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3 호 규정에 의거 휴

직을 명함.

정호영

지방농림지원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